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1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이만희의원안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시키고,(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제97조제5항제1호 삭제)

이춘석의원안은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①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②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 또는 반려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점, 「형법」상 단순 유기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만희의원안의 경우 맹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 대한 유기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벌금 300만원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한 반면, 이춘석의원안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법정형을 상향(벌금 300만원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는바,

반려동물과 그 외의 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하여 달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춘석의원안에 따르면 유기한 동물이 반려동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유기한 동물이 맹견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맹견인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률 규정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소유자등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동물 유기 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려동물과 그 외 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할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만희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